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86119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8611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41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재윤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10. 3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411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제1심판결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14, 13,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7.24㎡(단독주택)를 인도하고, 20,625,000원 및 2023. 5. 10.부터 위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신의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홍, 판사 정영훈, 판사 오연수